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637호 2023. 10. 12.(목)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제2023-1817호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재공고(3차)(온비드 공고)	
제2023-1818호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19호	용역 입찰 공고[평산~선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용역](G2B 공고)	
제2023-182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9	
제2023-182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53	
제2023-1822호	용역 입찰 공고(취소)[평산~선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용역](G2B 공고)	
제2023-1823호	용역 입찰 공고[평산~선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용역](G2B 공고)	
제2023-1824호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25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G2B 공고)	
제2023-1826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상남도 전시관 설치 및 운영(G2B 공고)	
제2023-1827호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공고..... 58	
제2023-1828호	제한경쟁 입찰공고[2023년 구조장비 추가(2차) 구매](G2B 공고)	
제2023-1829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상남도 전시관 구성 및 운영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G2B 공고)	
제2023-1831호	「관광개발 민간투자 대상지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32호	제출안건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33호	제출안건 공고(수정)(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34호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공개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35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36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837호	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 공고..... 59	

알 림

진주시 고시 제2023-199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0
-------------------	--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진주시 고시 제2023-200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1
통영시 고시 제2023-139호	통영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3
사천시 고시 제2023-245호	사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②:실안유원지 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66
거제시 고시 제2023-27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68
거제시 고시 제2023-278호	도시계획시설(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69
거제시 공고 제2023-1987호	도시계획시설(정주어항:학산항)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1
양산시 공고 제2023-2717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72
함안군 고시 제2023-97호	군관리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74
창녕군 고시 제2023-144호	창녕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76
창녕군 고시 제2023-145호	창녕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78
고성군 고시 제2023-1534호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1
하동군 고시 제2023-179호	하동군관리계획 【교통시설 : 도로(중로1-13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3
함양군 공고 제2023-1122호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 개설공사 완료 공고..... 88
거창군 고시 제2023-125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 89
경남도립남해대학 공고 제2023-145호	경남도립남해대학 조교 채용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3-147호	2023년 사방시설 정밀점검 용역(2차)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1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1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1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2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2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2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23호	국도79호선 함안함안봉성 포장도 보수공사 공법 선정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2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고 제2023-42호	2023년 제7회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기간제 노동자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4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91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2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49호	하천점용(변경,기간연장)허가 고시..... 93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5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94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5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95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6호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97

예 규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10월 12일

● 경상남도 예규 제248호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 개정 규정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조(임용 및 자격요건), 별지 제2호서식,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제3조(임용 및 자격요건) ① 경기부의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은 공개모집하고, 코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하되, 도내 지역 출신 선수를 우선 채용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상위입상자
2.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자

③ 경기부의 지도자 및 선수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실적증명서(지도자) 각 1부
5. 경기실적증명서 및 이적동의서(해당선수) 각 1부
6. 그 밖에 단장이 요구하는 서류

④ 지도자 및 선수와 입단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표준계약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도자 및 선수"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로서 선수단 활동을 하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지도자 및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도자 및 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도지사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지도자 및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지도자 및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지사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도지사와 약정한 훈련참가
3. 도지사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도지사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__시부터 __시까지, 1주 40시간 이내로 하되, 집중훈련기간은 주 6일, 1주 40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__시부터~__시(__시간)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지도자 및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단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지도자 및 선수 서명)

⑦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지도자 및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도지사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및 선수단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8조(도지사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제9조(지도자 및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도지사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지도자 및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④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지도자 및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도지사와 협의되지 않은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 ⑥ 지도자 및 선수는 계약기간 중 도지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경상남도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지도자 및 선수는 도지사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 착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 (한글) _____ 원(₩000,000,000)을 연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정액으로 매월 25일 지도자 및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도자 및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소속 경기부를 탈퇴할 경우 및 중도입사일 경우는 월별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도지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지도자 및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1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분배하기로 한다.

제12조(영리활동) 지도자 및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경상남도가 수익을 얻는 경우,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 및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지도자 및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도자 및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도지사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도지사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 및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경상남도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도자 및 선수의 활동 또는 경상남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지도자 및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도자 및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 및 선수의 명예나 기타 지도자 및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도지사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도자 및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지도자 및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지도자 및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지도자 및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지도자 및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 및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 및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경상남도(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지도자 및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지도자 및 선수가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 지도자 및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지도자 및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지도자 및 선수가 지도자 및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자 및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 및 선수와 도지사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① 도지사와 지도자 및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도지사 및 지도자 및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경 상 남 도 지 사	
주 소	
성 명	(인)

지 도 자 및 선 수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품의유지 및 청렴 서약서

본인은 경남도청 소속 운동경기선수로서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해지 및 불이익 처분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
2. 성 비위,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 선수단 내 괴롭힘(갑질) 등을 하지 않는다.
3.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소에는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주요대회에 앞서서는 합숙훈련에 필히 참가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자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5. 월 3일 이상 훈련에 불참 또는 주2회 이상 무단이탈하지 않는다.
6.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지 않는다.
7. 단장의 동의 없이 타 시·도 소속으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8. 경남도청 및 해당 연맹의 각종 행사 참여 요청 시 참여한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 연봉 확정표

○ 지도자

특급	A급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경력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경력 ·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 ·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경력 ·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선수 경력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 ·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 · 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자
4,800만원 이상	3,600~6,000만원	2,400~5,400만원

○ 선 수

특급	A급	B급	C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국가대표 선수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전 국가대표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유망주 · 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이 추천한 자
6,000만원 이상	4,800~8,400만원	3,000~6,000만원	2,400~4,800만원

별표 2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 참가경비 지급기준

○ 지도자

(단위 : 원)

구 분	식비 (1일당)	간식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일비 (1일당)
지급액	20,000	10,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10,000

※ 숙박료의 경우, 지도자는 1인 1실 사용 감안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시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6급 이하 공무원)을 준용한다.

○ 선 수

(단위 : 원)

구 분	식비 (1일당)	간식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일비 (1일당)
지급액	20,000	10,000	30,000	10,000

※ 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시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6급 이하 공무원)을 준용한다.

고 시

● 경상남도 고시 제2023-4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청건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정량어촌계(공민규)
- 주 소 : 통영시 정량동 868번지

2. 공사내용

- 공 사 명 :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 장 소 : 통영시 정량동 1382번지 지선 공유수면
- 공사내용(부잔교 이설)
 - 1호기 부잔교 15.2m×5.5m, 15.5m×5.5m, 도교 9.5m×1.5m
 - 2호기 부잔교 12.5m×4.5m×2기, 도교 11m×1.3m
 - 3호기 부잔교 11m×5.15m×2기, 도교 11m×1.3m
- 점용·사용면적 : 1,557㎡(직접 439, 간접 1,118)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3. 10. 6.

● 경상남도 고시 제2023-4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국가 지원 지방도	60	무안 ~ 부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86,766.9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창원시 대산면 우암리 유등리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장방리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4.34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 관련 사업 시행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6. 03. 15. ~ 2023. 12. 31.

변경 - 2006. 03. 15. ~ 2026. 12. 31.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과(055-211-2965),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055-212-4645)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시행기간 연장)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번호	60호	노선명	무안~부산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접도구역 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 사업 시행기간 연장				

첨부서류 없음

● 경상남도 고시 제2023-4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0호(2023. 3. 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1024호	설천~창선	창선면 진동리	5,730㎡	진동리 296-5	진동리 509-2	-	0.342
변경	지방도	1024호	설천~창선	창선면 진동리	5,542㎡	진동리 296-5	진동리 509-10	-	0.342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분할, 면적정정 등으로 인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및 정정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3. 3. ~ 2024. 6.
 - 변경 : 2023. 3. ~ 2024. 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1)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2)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남해군 건설교통과

- 첨부서류** : 1. 토지세목조서.
2. 지형도면 1부.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당초	진동리	296-5	도	3,954	1,108	경상남도		
	변경	진동리	296-5	도	3,954	1,108	경상남도		
2	당초	진동리	296-4	임	915	230	김일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78	
	변경	진동리	296-10	임	242	242	경상남도		
3	당초	진동리	495-10	임	2,081	149	탁윤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72	
	변경	진동리	495-25	임	182	182	경상남도		
4	당초	진동리	295-1	도	1,282	889	남해군		
	변경	진동리	295-1	도	1,282	889	남해군		
5	당초	진동리	1385	도	519	33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변경	진동리	1385-1	도	29.7	29.7	경상남도		
6	당초	진동리	1353	임	97,160	426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변경	진동리	1353-1	임	272.9	272.9	경상남도		
7	당초	진동리	495-11	도	2,297	840	남해군		
	변경	진동리	495-11	도	2,297	840	남해군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연번	구분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8	당초	진동리	495-20	임	487	115	윤계완 외 2인	사정	
	변경	진동리	495-27	임	109	109	윤계완 외 2인	사정	
9	당초	진동리	495-17	임	160	40	김안식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77	
	변경	진동리	495-26	임	45	45	경상남도		
10	당초	진동리	산168-4	도	5,122	29	(국)국토교통부		
	변경	진동리	산168-4	도	5,122	29	(국)국토교통부		
11	당초	진동리	495-12	임	70	6	김준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496번길 32-16	
	변경	진동리	495-24	임	8	8	경상남도		
12	당초	진동리	1240	도	403	217	(국)국토교통부		
	변경	진동리	1240	도	403	217	(국)국토교통부		
13	당초	진동리	495-13	도	612	245	남해군		
	변경	진동리	495-13	도	612	245	남해군		
14	당초	진동리	494-1	도	4,795	1,143	남해군		
	변경	진동리	494-1	도	4,795	1,143	남해군		
15	당초	진동리	509-9	임	1,280	18	경상남도		
	변경	진동리	509-9	임	1,280	18	경상남도		
16	당초	진동리	495-2	임	1,299	12	김준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496번길 32-16	
	변경	진동리	495-23	임	2	2	경상남도		
17	당초	진동리	494	전	1,270	197	박풍덕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227	
	변경	진동리	494-2	전	142	142	경상남도		
18	당초	진동리	496	전	139	12	김화금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504-14	
	변경	진동리	496-1	전	9	9	경상남도		
19	당초	진동리	509-2	임	4,147	21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90번길, 1001호 (청담동,연세리버테라스)	
	변경	진동리	509-10	임	11	11	경상남도		
소 계	당초				127,992	5,730			
	변경				20,798	5,542			

● 경상남도 고시 제2023-456호

양산 신기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 신기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I.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양산 신기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
- 면적 : 41,94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장래 도시철도(북정역) 개설 등 역세권 형성에 따른 높은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
-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복합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자족적인 시가지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 주식회사 현원개발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4. 12. 31.
- 시행방법 :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41,947	100.0	
일반상업용지	15,537	37.0	
주상복합용지	12,082	28.8	
판매/근생시설용지	3,455	8.2	
기타시설용지	7,604	18.1	
의료시설	2,846	6.8	
업무시설	2,733	6.5	
숙박시설	2,025	4.8	
도시기반시설용지	18,806	44.9	
도로	12,834	30.6	
주차장	817	1.9	
근린광장	490	1.2	
공원	3,459	8.3	소공원 3개소
녹지	1,206	2.9	완충녹지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도로	대로1-1 : B=20m~55m, L=22,045m (도시개발구역 편입구간 : B=3m, L=406m)	일반도로
	중로2-A : B=15m, L=427m	일반도로
	중로3-A : B=12m, L=85m	일반도로
	중로3-B : B=12m, L=285m	일반도로
주차장	주차장A : A=817m ²	

2) 공간시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광장	교통광장16 : A=45,745m ² → 14,360m ² (감.31,385m ²)	도시개발구역 내 제척
	근린광장A : A=490m ²	
공원	소공원A : A=2,014m ²	
	소공원B : A=817m ²	
	소공원C : A=628m ²	
녹지	완충녹지A : A=1,206m ²	

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명세 [붙임 1]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 1]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 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 해당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1)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6	양산 신기2지구 도시개발구역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	-	증)41,947	41,947	-	

2)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96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	신설 : 41,947㎡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에 장래 도시철도(북정역) 역세권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복합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적인 시가지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나. 용도지역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외의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 결정되는 사항임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1) 양산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4,550,229.00	-	484,550,229.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28,811,050.80	-	28,811,050.80	5.9	
	제1종전용주거지역	22,852.00	-	22,852.00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9,399,213.40	-	9,399,213.40	1.9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04,547.60	-	11,804,547.60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5,711,632.00	-	5,711,632.00	1.2	
	준주거지역	1,872,805.80	-	1,872,805.80	0.4	
상 업 지 역	소 계	2,817,449.50	증) 41,947	2,859,396.50	0.6	
	중심상업지역	213,642.70	-	213,642.70	0.0	
	일반상업지역	2,567,714.20	증) 41,947	2,609,661.20	0.6	
	근린상업지역	32,594.50	-	32,594.50	0.0	
	유통상업지역	57,776.10	-	57,776.10	0.0	
공 업 지 역	소계	16,924,797.80	-	16,924,797.80	3.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4,754,638.00	-	14,754,638.00	3.0	
	준공업지역	2,170,159.80	-	2,170,159.80	0.5	
녹 지 지 역	소계	263,196,884.90	감) 41,947	263,154,937.90	54.3	
	보전녹지지역	68,502,649.00	-	68,502,649.00	14.1	
	생산녹지지역	2,065,456.00	-	2,065,456.00	0.4	
	자연녹지지역	192,628,779.90	감) 41,947	192,586,832.90	39.8	
관 리 지 역	소계	19,288,791.00	-	19,288,791.00	4.0	
	계획관리지역	1,368,544.00	-	1,368,544.00	0.3	
	생산관리지역	6,882,488.00	-	6,882,488.00	1.4	
	보전관리지역	11,037,759.00	-	11,037,759.00	2.3	
농림지역		93,428,681.00	-	93,428,681.00	19.3	
자연환경보전지역		60,082,574.00	-	60,082,574.00	12.4	

주) 기정은 양산시 고시 제2022-423호(2022.12.29.) 양산 어곡제2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항임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1,947	-	41,947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41,947	41,947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1,947	감) 41,947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일반상업 지역	41,947	800% 이하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복합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적인 시가지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용도 지역을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6	양산 신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	-	증) 41,947	41,947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96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	신설 : 41,947㎡	○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제고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복합 랜드마크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적인 시가지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외의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 결정되는 사항임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가) 도로

○ 총 관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4	1,203	12,834	1	406	1,642	1	427	6,583	2	370	4,609
대 로	1	406	1,642	1	406	1,642	-	-	-	-	-	-
중 로	3	797	11,192	-	-	-	1	427	6,583	2	370	4,609
소 로	-	-	-	-	-	-	-	-	-	-	-	-

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에 한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20~55	주간선 도로	22,045	광로 2-2종점	순지리 구역계	일반도로	-	건고 103호 (‘70. 3.9)	-
변경	대로	1	1	20~55	주간선 도로	22,045 (406)	광로 2-2종점	순지리 구역계	일반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장
신설	중로	2	A	15	국지 도로	427	대로 1-1	대로 3-2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85	대로 1-1	중로 2-A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85	중로 2-A	중로 3-A	일반도로	-	-	-

주) 괄호안은 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	대로 1-1	○ 일부구간 폭원확장 - 확장구간 : 406m - 확장폭원 : 3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사업대상지 연결 구간의 폭원확장
-	중로 2-A	○ 노선신설 - B=15m, L=427m	○ 간선도로에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3-A	○ 노선신설 - B=12m, L=85m	○ 구역 내 내부도로망 형성 및 각 시설 용지로의 접근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3-B	○ 노선신설 - B=12m, L=285m	○ 구역 내 내부가로망 형성 및 각 시설 용지로의 접근을 위한 도로 신설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A	주차장	양산시 북정동 814-4번지 일원	-	증) 817	817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 A=817㎡	○소공원C 및 의료시설 등의 방문객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다)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6	광장	교통광장	북정동 821-5	양산시 북정동 802-6 번지 일원	45,745	감) 31,384	14,630	경고 370호 (‘12.8.30.)	-
신설	A	광장	근린광장	양산시 신기동 496-2번지 일부		-	증)490	490	-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광장	○교통광장 면적축소 - A = 45,745㎡ → 14,360㎡ 감) 31,384㎡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교통광장의 합리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구역 내 결정되어 있는 교통광장을 제척
A	광장	○근린광장 신설 - A = 490㎡	○지역주민 및 이용객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근린광장 신설

라) 공 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A	신기2지구 제1소공원	소공원	양산시 북정동 811-4번지 일원	-	증) 2,014	2,014	-	-
신설	B	신기2지구 제2소공원	소공원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	-	증) 817	817	-	-
신설	C	신기2지구 제3소공원	소공원	양산시 북정동 821-4번지 일부	-	증) 628	628	-	-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신기2지구 제1소공원	○소공원 신설 - A=2,014㎡	○지역주민 및 의료시설 이용자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신설
B	신기2지구 제2소공원	○소공원 신설 - A=817㎡	○지역주민 및 주변시설 이용자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신설
C	신기2지구 제3소공원	○소공원 신설 - A=628㎡	○지역주민 및 주변시설 이용자들의 휴식장소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설

마)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양산시 신기동 531-1번지 일원	-	증) 1,206	1,206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완충녹지 신설 - A=1,206㎡	○주변 시설로 인한 각종 공해 및 사고 등으로부터의 완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의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 결정되는 사항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양산시)	면 적(㎡)	
계	41,947	-	-	41,947	-
1B	12,082	1	북정동 821-5번지 일원	12,082	주상복합
2B	11,183	1	북정동 814-2번지 일원	842	판매시설
		2	북정동 815번지 일원	800	판매시설
		3	북정동 821-4번지 일부	628	소공원C
		4	북정동 567번지 일원	800	판매시설
		5	신기동 496-2번지 일부	842	판매시설
		6	신기동 496-2번지 일부	490	근린광장
		7	신기동 531-1번지 일원	2,025	숙박시설
		8	신기동 499-4번지 일원	2,733	업무시설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양산시)	면 적(㎡)	
2B	11,183	9	신기동 496-5번지 일원	817	소공원B
		10	신기동 531-1번지 일부	669	완충녹지
		11	신기동 513번지 일원	537	완충녹지
3B	5,848	1	북정동 811-4번지 일원	2,014	소공원A
		2	북정동 814-4번지 일원	817	주차장
		3	북정동 811-2번지 일원	2,846	의료시설
		4	북정동 813번지 일원	171	근생시설
-	12,834	-	-	12,834	도로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의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 결정되는 사항임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1B-1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이하인 것 ※ 주거외 용도 -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용도의 건축물	주상 복합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44층 이하 (평균 40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3-A호선 및 중로3-B호선 남측부 경계로부터 2m 이격 ○ 벽면한계선 : 2층 이하 (※ 지구단위계획도면 참조)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2B-1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카목 중 학원, 타목 중 독서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중 학원 	판매 (교육) 시설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색상</th> <th>채도</th> <th>명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10YR</td> <td>2이하</td> <td>8이상</td> </tr> <tr> <td>보조색</td> <td>10YR</td> <td>6이하</td> <td>3이상 7이하</td> </tr> <tr> <td>강조색</td> <td colspan="3">5BG 5/6</td> </tr> </tbody> </table>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1-1호선 경계로부터 2m 이격 중로3-A호선 경계로부터 2m 이격																			
-	2B-2, 4, 5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7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및 판매시설 	판매 시설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카목 중 학원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색상</th> <th>채도</th> <th>명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10YR</td> <td>2이하</td> <td>8이상</td> </tr> <tr> <td>보조색</td> <td>10YR</td> <td>6이하</td> <td>3이상 7이하</td> </tr> <tr> <td>강조색</td> <td colspan="3">5BG 5/6</td> </tr> </tbody> </table>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1-1호선 경계로부터 2m 이격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2B-7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으로서 지상1,2층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호텔)(지상1,2층 제외)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바목에 따른 소형호텔업에 준하는 부대시설을 갖출 것 	숙박 시설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1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색상</th> <th style="width: 25%;">채도</th> <th style="width: 25%;">명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10YR</td> <td>2이하</td> <td>8이상</td> </tr> <tr> <td>보조색</td> <td>10YR</td> <td>6이하</td> <td>3이상 7이하</td> </tr> <tr> <td>강조색</td> <td colspan="3">5BG 5/6</td> </tr> </tbody> </table>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건축선	-																			
-	2B-8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업무 시설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00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색상</th> <th style="width: 25%;">채도</th> <th style="width: 25%;">명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10YR</td> <td>2이하</td> <td>8이상</td> </tr> <tr> <td>보조색</td> <td>10YR</td> <td>6이하</td> <td>3이상 7이하</td> </tr> <tr> <td>강조색</td> <td colspan="3">5BG 5/6</td> </tr> </tbody> </table>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1-1호선 경계로부터 2m 이격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3B-3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의료 시설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색상</th> <th>채도</th> <th>명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10YR</td> <td>2이하</td> <td>8이상</td> </tr> <tr> <td>보조색</td> <td>10YR</td> <td>6이하</td> <td>3이상 7이하</td> </tr> <tr> <td>강조색</td> <td colspan="3">5BG 5/6</td> </tr> </tbody> </table>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1-1호선 경계로부터 2m 이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2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에 따른 거리 이격																						
-	3B-4	용도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중 의약품·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소매점, 라목	근생 (의료) 시설																		
			권장 용도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색상</th> <th>채도</th> <th>명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10YR</td> <td>2이하</td> <td>8이상</td> </tr> <tr> <td>보조색</td> <td>10YR</td> <td>6이하</td> <td>3이상 7이하</td> </tr> <tr> <td>강조색</td> <td colspan="3">5BG 5/6</td> </tr> </tbody> </table>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구분	색상		채도	명도																			
주조색	10YR		2이하	8이상																			
보조색	10YR		6이하	3이상 7이하																			
강조색	5BG 5/6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1-1호선 경계로부터 2m 이격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외의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 결정되는 사항임

○ 공공보행통로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1B-1	○ 벽면한계선 지정 이외의 구간	중로2-A호선, 중로3-B호선 (주상복합용지 동측변에 한함)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1B-1	○ 도로모퉁이 및 도로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주상복합용지 동측 및 북측변	중로3-A호선, 중로3-B호선 (주상복합용지 동측변에 한함))
-	2B-1~5	○ 도로모퉁이 및 도로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대로1-1호선과 접하는 구간	대로1-1호선, 중로3-A호선
-	2B-7	○ 도로모퉁이 및 도로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완충녹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중로2-A호선, 중로3-B호선
-	3B-2~3	○ 도로모퉁이 및 도로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대로1-1호선과 접하는 구간	대로1-1호선, 중로2-A호선, 중로3-A호선

II. 관련도면 : 게재 생략

※ 붙임1

연번	소재지 (양산시)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리 내용
합 계				50,012	41,947						
1	신기동	495	구	274	274	농림축산 식품부					
2	신기동	495-5	구	4	3	농림축산 식품부					
3	신기동	496-2	답	3,051	3,051	김민제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09 3동 3509호(사직동 로얄맨션2차)	1/6			
						김영석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1번길 32(사직동)	1/6			
						김영철	울산광역시 남구 굴화4길 22 207동 604호 (무거동 굴화주공아파트)	1/6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연번	소재지 (양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김윤제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 103동 1902호 (아음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	1/6			
						김향미	부산광역시 동래구 층렬대로428번길 49 104동 1305호(안락동 동부산아이존빌아파트)	1/6			
						김향숙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3,217동 2001호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1/6			
4	신기동	496-5	답	2,397	2,397	김상리	양산군 양산읍 남부리 392-5	2/10	동양산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695-6 (남무지점)	근저 당권
						김신성	양산군 양산읍 남부리 392-5	3/10	양산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3길 10 (남부동)	근저 당권
						김예리	양산시 남부동 602-1 양산신도시아파트청어람 209-204	2/10			
						한근순	양산군 양산읍 남부리 392-5	3/10			
5	신기동	496-10	답	208	208	양산시					
6	신기동	498	구	74	74	농림축산 식품부					
7	신기동	498-1	구	185	185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8	신기동	498-2	구	46	46	김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 (가회동)				
9	신기동	498-5	도	8	8	기획 재정부					
10	신기동	498-7	구	25	19	농림축산 식품부					
11	신기동	498-8	구	21	21	양산시					
12	신기동	499-3	도	138	75	양산시					
13	신기동	499-4	답	1,140	1,140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연번	소재지 (양산시)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4	신기동	499-6	도	263	67	양산시					
15	신기동	499-9	도	156	67	경상남도					
16	신기동	499-11	답	332	332	김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 (가회동)				
17	신기동	499-12	도	1,934	9	국토 교통부					
18	신기동	499-14	답	58	58	김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 (가회동)				
19	신기동	499-15	도	182	182	국토 교통부					
20	신기동	499-17	답	40	40	양산시					
21	신기동	499-18	답	49	49	양산시					
22	신기동	513	구	1,808	1,208	농림축산 식품부					
23	신기동	514	도	770	645	농림축산 식품부					
24	신기동	529	구	704	594	농림축산 식품부					
25	신기동	531-1	답	5,250	5,121	김해운	부산 북구 화명동 2264 화명동롯데아파트낙천대 113-503	1/2	양산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1길 10-19 (북부동)	근저 당권
						김해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18번길 79-14, 401호 (장전동,금정빌라)	1/2	양산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1길 10-19 (북부동)	지상권
26	신기동	531-26	구	556	58	양산시					
27	신기동	531-27	도	3,033	35	양산시					
28	신기동	532	도	233	63	농림축산 식품부					
29	신기동	540	도	251	14	농림축산 식품부					
30	신기동	541-21	도	462	18	양산시					
31	신기동	567	도	273	273	농림축산 식품부					
32	신기동	567-4	도	12	2	농림축산 식품부					
33	북정동	803	구	328	328	농림축산 식품부					
34	북정동	811-2	답	829	829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연번	소재지 (양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35	북정동	811-3	답	2,553	2,553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36	북정동	811-4	답	2,836	2,835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37	북정동	811-9	제	592	140	국토 교통부					
38	북정동	811-10	답	84	84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39	북정동	811-11	답	260	260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지상권
40	북정동	811-12	답	518	518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지상권
41	북정동	811-14	답	16	16	양정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225, 201동 201호 (좌동, 해운대2차두산아파트)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지상권
42	북정동	811-17	답	229	218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지상권
43	북정동	812	도	149	149	농림축산 식품부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연번	소재지 (양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44	북정동	813	구	148	148	농림축산 식품부					
45	북정동	814-2	답	764	764	한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39번길 17-3 (광안동)				
46	북정동	814-3	답	1,193	1,193	박세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507동 1702호 (구서동, 구서동롯데캐슬골드)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양산영업부)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47	북정동	814-4	답	3,474	3,474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48	북정동	814-5	답	2,363	2,363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49	북정동	814-10	답	809	809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50	북정동	815	구	278	278	농림축산 식품부					
51	북정동	821-4	답	2,515	2,515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동래농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8번길 28 (수안동)	근저 당권
									동래농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8번길 28 (수안동)	지상권
52	북정동	821-5	답	4,053	4,053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동래농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8번길 28 (수안동)	근저 당권
									동래농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8번길 28 (수안동)	지상권

연번	소재지 (양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53	북정동	821-6	답	876	876	현원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4동 401호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마린제니스지점)	근저 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지상권
54	북정동	821-7	답	727	727	이수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32, 104동 501호 (범천동,범천경남아파트)				
55	북정동	821-8	답	481	481	이수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32, 104동 501호 (범천동,범천경남아파트)				

● **경상남도 고시 제2023-4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기정	지방도	1010	하이-동해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일원	3,757	고성읍 신월리 산185-6	고성읍 신월리 산188-1	고성군 고성읍	155
변경	지방도	1010	하이-동해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일원	2,686	고성읍 신월리 산185-6	고성읍 신월리 산188-1	고성군 고성읍	155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도1010호선(신월리) 굴곡부 개량공사 시행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나.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10. ~ 2024. 1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1018호	노선명	사등~장목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도 로 명 : 지방도1010호선 하이~동해간 도로(L=0.155km) ○접도구역 : 해당없음 【국토계획법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접도구역 지정목적	-				
비 고	-				

3. 군관리계획(도로:소로2-39호선)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2,810	소로1-12	중로1-12 (고성읍 월평리)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77-127호 (1977. 1. 26.)	고성 도시 지역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2,810	소로1-12	중로1-12 (고성읍 월평리)	일반 도로	-	-	일부 선형 변경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39	소로2-39	○일부구간 선형변경	○고성읍 신월리 592-1번지 일원의 굴곡진 도로선형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선형 개선을 통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하고자 함.

4.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 위치(변경)

가) 기정: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9-1번지 일원

나) 변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9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사업의 종류 :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39호선) 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지방도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신월리)

다. 사업의 규모(변경)

가) 지정: 연장 155m, 폭원 8~15m, 면적 1,814㎡

나) 변경: 연장 155m, 폭원 8~15m, 면적 2,686㎡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가)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나) 성명: 고성군수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변경)

가) 지정: 2019년 9월 ~ 2020년 4월 30일

나) 변경: 2019년 9월 ~ 2024년 12월 31일

5. 위치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1 / 붙임 2

6. 도로구역(접도구역)과 지적선이 표시된 지형도면 : 붙임 3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과, 고성군 건설교통과

경 남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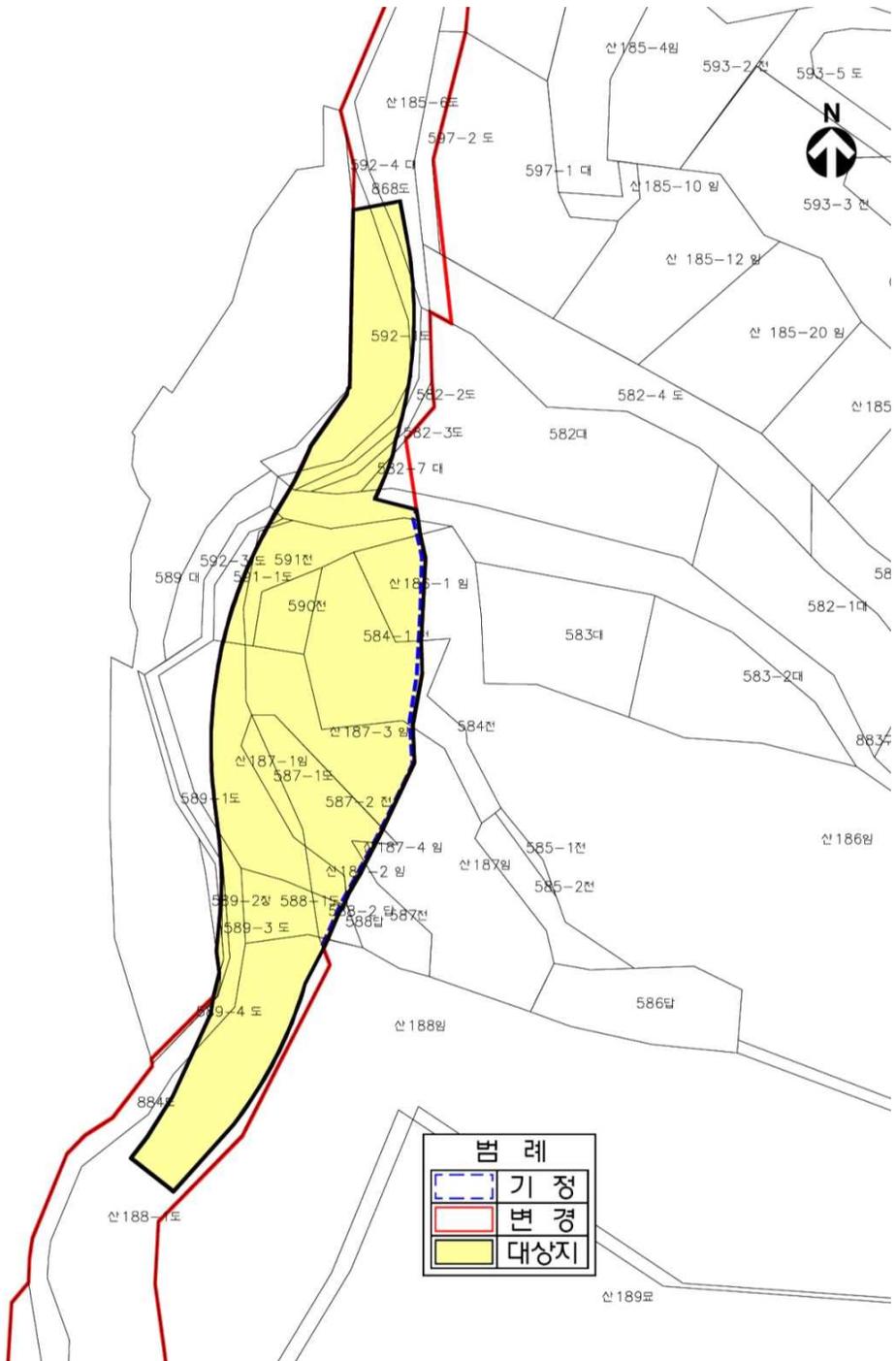
제2637호

2023. 10. 12.(목)

[붙임 2]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소계	27필지			14,011	2,686		
1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5-6	도로	635	17	고성군	
2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68	도로	856	94	국토교통부	
3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92-1	도로	318	271	고성군	
4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2-2	도로	46	20	고성군	
5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2-3	도로	41	26	고성군	
6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2-7	대	7	7	김*중	
7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83	구거	701	85	농림축산식품부	
8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6-1	임야	116	116	고성군 외 7인	
						권*부	
						최*철	
						최*슬	
						권*중	
						안동권씨좌윤공파중증업공문중	
						권*만	
						권*원	
9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91	전	160	153	고성군	
10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90	전	89	89	고성군	
11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91-1	도로	71	22	고성군	
12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4-1	전	331	331	이*근	
13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7-3	임야	282	282	이*순	
14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7-1	도로	50	50	고성군	
15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7-2	전	198	194	이*근	
16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7-1	임야	378	247	고성군	
17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7-4	임야	6	6	이*순	
18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84	도로	582	76	국토교통부	
19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7-2	임야	31	30	이*순	
20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8-2	답	18	18	고성군	
21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8-1	도로	97	97	고성군	
22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9-1	도로	33	2	진*도	
23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9-3	도로	10	10	진*도	
24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8	임야	7,621	1	이*욱 외 1인	
						권*홍	
25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9-2	공장용지	21	5	고성군	
26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89-4	도로	8	2	진*도	
27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88-1	도로	1,305	435	고성군	

[붙임 3]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경상남도 고시 2023-458호

2023년도 3분기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2023년도 3분기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23년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경남)

구분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경남	9건			2,395	1,456		
	경남	창원시	가주 일반산단	일반	150	77	(주)세주 외 2개사	
	경남	양산시	주남 일반산단	일반	256	160	콜핑 외 12개사	
	경남	함안군	사내 일반산단	일반	152	109	(주)삼주산업 외 6개사	
	경남	거제시	부춘 농공단지	농공	32	18	지에스엠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용산 일반산단	일반	42	23	진우개발(주) 외 11개사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단	일반	1,574	956	삼강엠엔티(주)	
	경남	밀양시	상남제2 농공단지	농공	36	20	(주)한국카본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도척산단	도척	33	21	창원시	
	경남	창원시	호계 일반산단	일반	120	72	(주)대부개발 (주)상우기업 (주)와이텍	신규

공 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80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 4. 공고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6.(목)(15일간)
- 5. 납부기한 : 2024. 01. 08.(월)까지
 ※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 6. 정상부과 대상자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당사자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반송 사유
경남06보 5542	2023. 08. 18. 10:41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지방도 1001호선)	축하중 1.8톤 초과	문*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로 70-4	500,000	폐문 부재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 7. 이의신청 기간 :** 당사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3. 12. 25.(월)까지**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055-254-4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

1.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귀하께서는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해당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告知)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는 제외).
3. 위와 같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기간 최장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징수됩니다.
4.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제3호에 따른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82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발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 4. 공고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6.(목)(15일간)
- 5. 납부기한** : 2024. 1. 2.(화)까지
※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 6. 정상부과 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당사자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미송달 사유
1	경남06로58*9	2023. 5. 25. 09:33분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국지도 60호선 상	축하중 1.70톤 초과	업*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5*, 20*호	500,000	폐문 부재
2	경북99아66*6	2023. 6. 24. 12:46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로, 국지도 58호선 상	높이 0.21미터 초과	권*술	경상북도 경주시 광종길 73-1*, 101동 1*05호	300,000	폐문 부재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 7. 이의신청 기간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3. 12. 26.(화)까지** 팩스 (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

1.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귀하께서는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해당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告知)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는 제외).
3. 위와 같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기간 최장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징수됩니다.
4.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제3호에 따른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82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6.(목)(15일간)
 ※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1,280,000원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당사자	주 소	과태료 (원)	미송달 사유
1	앞)경남99바82*8뒤) 경남82사86*6	2023. 9. 1. 16:47분경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지방도 1021호선 상	폭 0.90미터 초과	김*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신촌*길 2*	800,000	폐문 부재
2	부산96아19*1	2023. 9. 1. 23:30분경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 상	폭 1.50미터 초과	이*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로91번길 1*, *01호	800,000	폐문 부재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 6.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3. 11. 15.(수)까지 팩스 (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7.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사전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위반행위가 제3자에 의해 기인된 사실(차량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요구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차상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귀하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산출근거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은 금액(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납기 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귀하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미성년자
5.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께서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에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과태료의 강제 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체납 등의 정보 제공,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監置) 등의 조치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 나.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허가받은 사항(총중량, 축하중, 폭, 높이, 길이)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70	100
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파.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30		
거.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00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827호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	대 표 자	소 재 지	수리사항	
				폐 업 일	폐업사유
인셀덤 루비 대리점	경남2022-제191호 (2022. 11. 7.)	최경화	경남 진주시 향교로12번길 4	2023. 10. 4.	자진폐업

2. 처리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 문의장소 : (우)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6, 경남도청 균형정책과 (☎ 055-211-6077)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837호

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의회 시의원 1명(1건)의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공개목록

공개대상자(위탁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양산시의회	시의원	-	곽종포		
본인과의 관계	종목	신탁일자	위탁가액 (천원)	변동가액 (천원)	처분완료 여 부
곽종포	(주)양산전력	2018.10.29.	101,800	184,573	처분완료

알 림

● 진주시 고시 제2023-199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진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12	12	국지 도로	98	대로3-7	소로중앙 2-57	일반 도로	-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중복결정 (A=250㎡)
기정	소로	중앙2	57	8	국지 도로	268	대로3-7	중로2-13	일반 도로	-	경고제291호 (2000.12.4.)	
변경	소로	중앙2	57	8	국지 도로	170	소로중앙 3-65	중로2-13	일반 도로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11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연장 : 98m - 폭원 : 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폭 확장에 따른 노선 신설
소로중앙 2-57호선	소로중앙 2-5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축소 - 연장 : 268m→170m - 폭원 : 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폭 확장에 따른 노선 축소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4	광장44호	근린광장	인사동 5-17번지 일원	-	증) 290	290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4	광장44호	○ 광장(근린광장) 신설 - 위 치 : 망경동 5-17번지 일원 - 면 적 : 290㎡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폭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린광장을 조성하고자 함

3. 지형도면 : 게재생략(진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진주시 도시계획과(☎055-749-88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진주시 고시 제2023-200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진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조서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남강 3	6	6	국지 도로	482	중로1-3	3호공원 구역계	일반도로		건고 제96호 ('68.8.5)	
변경	소로	남강 2	50	8~10	국지 도로	476	중로1-3	3호공원 구역계	일반도로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남강3-6	소로 남강2-50	○도로폭원 확장 - L=482m→476m - B=6m→8~10m	○망진산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망경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망경공원 진입도로 폭원을 확장하고자 함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2	주차장	망경동 220-5번지 일원	-	증) 6,756	6,756		

○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2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6,756m ²	○망진산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망경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망경공원	근린공원	진주시 망경동 일원	1,012,233	감) 310	1,011,923	1968.5.27 건설부 고시 제331호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망경공원	○공원 면적 변경 : 1,012,233m ² → 1,011,923m ² (감 310m ²)	○소로 2-50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진입도로와 공원 중복구간의 공원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86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통영시 고시 제2023-139호

통영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통영시 도남동 317번지 일원의 미륵근린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통 영 시 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통영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
- 명칭: 통영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1차: 59,294㎡ (통영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 2차: 828㎡ (통영 케이블카 ~ 루지 연결육교 설치사업)
- 3차: 14,541㎡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1, 2차
 - 성 명: 통영시장
통영관광개발공사 대표 김용우
 - 주 소: 통영시장[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관광개발공사[통영시 발개로 205(도남동)]
- 3차
 - 성 명: 통영시장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5. 사업기간

- 1차: 2012. 12. 24. ~ 2024. 12. 31.
- 2차
 - 당 초: 2022. 9. 16. ~ 2023. 9. 16.
 - 변 경: 2022. 9. 16. ~ 2023. 12. 31.
- 3차: 2023. 7. 13.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변경없음): 불임

□. 서류열람 및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34) 및 관광과(055-650-0543)에 문의 바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 1차 사업구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59,294						
1	도남동	305	답	225	225	통영시					
2	도남동	317	임	12,608	596	통영시					
3	도남동	623-7	구	52	52	국(국토교통부)					
4	도남동	623-9	구	505	505	국(국토교통부)					
5	도남동	623-15	구	1,071	628	국(기획재정부)					
6	도남동	624	도	40	39	국(국토교통부)					
7	도남동	624-1	도	52	52	국(기획재정부)					
8	도남동	624-2	도	226	226	국(기획재정부)					
9	도남동	627	도	486	486	국(국토교통부)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0	도남동	산63-19	도	6,995	30	통영시					
11	도남동	281	원	20,772	20,772	통영시					
12	도남동	281-1	구	186	186	통영시					
13	도남동	291	원	20,923	19,122	통영시					
14	도남동	299-1	원	318	318	통영시					
15	도남동	303	원	5,660	5,660	통영시					
16	도남동	303-1	구	1,285	1,285	통영시					
17	도남동	307-1	원	6,726	6,505	통영시					
18	도남동	307-3	구	59	59	통영시					
19	도남동	311	전	73	9	통영시					
20	도남동	331	원	292	292	통영시					
21	도남동	341	원	1,657	1,370	통영시					
22	도남동	341-1	원	550	263	통영시					
23	도남동	341-6	원	52	52	통영시					
24	도남동	623-14	구	562	562	국(국토교통부)					

- 2차 사업구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합계				42,112	828						
1	도남동	349-1	대	32,910	24	통영관광 개발공사	도남동 349-1				
2	도남동	산 63-19	도	6,995	233	통영시					
3	도남동	341	원	1,657	284	통영시					
4	도남동	341-1	원	550	287	통영시					

- 3차 사업구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합계				41,401	14,541						
1	도남동	291	유	20,923	1,801	통영시					
2	도남동	307-1	유	6,726	221	통영시					
3	도남동	311	유	73	64	통영시					
4	도남동	317	임	12,608	12,012	통영시					
5	도남동	623-15	구	1,071	443	통영시					

● 사천시 고시 제2023-245호

사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②:실안유원지 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51호(2021.2.25.)로 최종 결정(변경)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52호(2022.3.17.)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②:실안유원지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1.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천시 실안동 861-4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유원지②:실안유원지 도로, 주차장)사업
 - 사업의 명칭: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도로, 주차장) 개설공사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 당 초: A=7,704㎡
 - └ 변 경: A=6,844㎡(감 86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사천시장(관광진흥과장)
 - 주 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2. 3. 17.
 - ┌ 당 초: 2024. 12. 31.
 - └ 변 경: 2025. 12. 31.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위 치			지 목	대장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 고	
	시	동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사천	실안	861-4	답	110	63	110	-	사천시						
			861-8	답	-	47	-	47							도로
2	사천	실안	863-2	답	328	306	328	306	사천시					주차장	
			863-3	답	-	22	-	22							도로
3	사천	실안	859	답	830	267	830	-	사천시						
			859-1	답	-	418	-	418							도로
			859-2	답	-	145	-	145							주차장
4	사천	실안	858-2	답	1,957	1,819	1,957	1,819	신봉상	563				주차장	
			858-11	답	-	138	-	138							도로
5	사천	실안	858-1	답	914	529	914	-	이광희	부산 금정구 부곡동 200-24 동원아트빌라 202	삼천포농업 협동조합	별리동261-5 (각산지점)	근저당		
			858-10	답	-	385	-	385	사천시					도로	
6	사천	실안	858-4	도	28	28	28	28	사천시					도로	
7	사천	실안	744-1	도	39	30	39	30	사천시					주차장	
			744-6	도	-	9	-	9							도로
8	사천	실안	744-5	답	659	330	330	-	사천시						
			744-7	답	-	249	-	249							도로
			744-8	답	-	80	-	80							주차장
9	사천	실안	847-4	답	55	53	55	53	사천시					주차장	
			847-8	답	-	2	-	2							도로
소 계					4,920	4,920	4,591	3,731	감860						

3.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 및 관광진흥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77) 또는 관광진흥과(☎055-831-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고시 제2023-27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거 제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총 저수량 (천톤)	수해 면적 (ha)	길이 (m)	높이 (m)			
텃골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704-2번지 일원	13.5	5	158	5	거제시장	정밀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	
술역1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620-1번지 일원	13	11	138	3.9	거제시장	정밀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	
중리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349번지 일원	4.4	3	36	6.8	거제시장	정밀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수지 사면에 중대 결함에 해당하는 누수 및 침하 발생, 여수로 벽체 및 바닥슬래브 파손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23. 10. 4.

6. 문의처 : 경상남도 거제시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55-639-6333)

● 거제시 고시 제2023-278호

**도시계획시설(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3-164호(2023.06.08.)로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상동동 산 3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나. 명 칭 : 154KV 거제변전소 인출T/L 지장송전선로 지중화이설공사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3. 사업개요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면적	면적(㎡)	
1	전기공급설비	상동동 산30-2	53,303	375	철탑 C/H2
3	전기공급설비	상동동 산30-4	609	609	철탑 C/H1
4	전기공급설비	상동동 731	311	311	철탑 C/H3

4. 사업시행자

- 거제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거제시 상동11길 35
- 황도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110, 104동 704호(명지동, 더 힐 시그니처)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4.12.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 **붙임**

(전기공급설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상동동	산30-4	임	3,491	959	황도연	김해시 삼안로 132번길 9-33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2	상동동	산30-12	도	196	25	국토교통부	-	-	-	-	
3	상동동	731	답	930	28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4	상동동	731-7	답	235	3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	-	
합 계(4필지)				4,852	1,295						

● 거제시 공고 제2023-1987호

도시계획시설(정주어항:학산항)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호(2011.11.2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정주어항:학산항)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07-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학산항)사업
- 나. 명 칭 : 학산항 어구보관창고 설치사업

3.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도시관리계획결정 (㎡)	사업시행규모 (㎡)	비고
항만	정주어항	둔덕면 학산리 107-8번지 일원	112,324	1,166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해양항만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간
- 준공예정일 : 2024.03.31.

6. 열람기간 : 2023.10.12. ~ 2023.10.27.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45)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1 참조”

● **붙임 1**

- 학산항 어구보관창고 설치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둔덕면 학산리	107-8	잡	1,166	1,166		거제시	거제시 계룡로 125				
합계		1필지		1,166	1,166							

● **양산시 공고 제2023-2717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양산시 평산동 산171-2번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양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양산시 평산동 산171-2번지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
- 명칭: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

3. 사업규모: A=169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장(문화관광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4.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평산동	산171-2	임	72,397	169	양산시					
합계				72,397	169						

7.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공고방법: 도 공보 게재
- 공고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양산시청 도시계획과(☎055-392-2724)

● 함안군 고시 제2023-97호

**군관리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619-2번지 일원 칠원119안전센터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함 안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2,842	중로 1-1	무릉리 구역계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1979-235호 (1979.12.08.)	
변경	대로	1	1	35 ~ 66	주간선 도로	2,842	중로 1-1	무릉리 구역계	일반 도로		-	경미한 변경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 칠원읍 회전교차로 개설공사로 인한 일부 구간 확폭 (경미한 변경)

2. 실시계획 인가 사항

가. 사업의 위치: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619-2번지 일원 칠원119안전센터 앞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칠원119안전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다. 사업의 규모: 회전교차로 설치 L=175m, B=35~66m, A=7,658㎡

라.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합계				12,836	7,658					
1	칠원읍 구성리	613-1	도	240	100		국(건설부)			
2	“	619-2	도	373	231		국(건설부)			
3	“	616-3	도	109	109		국(건설부)			
4	“	618-1	도	490	490		국(건설부)			
5	“	617-3	도	401	401		국(건설부)			
6	“	613-2	답	232	232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번길 1*3, 10*동 1**2호	김*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읍*로 2*7	동창원 *****	근저당권자
7	“	616-4	도	5	5		국(건설부)			
8	“	616-2	답	66	66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3**	최*도			
9	“	615-1	답	449	449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	김*옥			
10	“	627-1	답	370	370	함안군 칠원읍 용산*길 *2	손*옥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 *7, 1**동 1**1호	민*기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솔밭로 *1, 7**호	하*식			
11	“	615-4	도	2,112	1,660		국(건설부)			
12	“	615-9	도	38	38		함안군			
13	“	615-2	도	49	49		함안군			
14	“	625-4	대	6	5		함안군			
15	“	626-3	도	124	23		함안군			
16	“	615-6	도	87	40		국(건설부)			
17	“	626-1	도	329	22		국(건설부)			
18	“	973	도	5,331	1,515		국(건설부)			
19	“	617-2	도	10	10		국(건설부)			
20	“	616-5	도	212	212		국(건설부)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21	“	618-2	도	1,004	1,004		국(건설부)			
22	“	615-7	도	167	167		국(건설부)			
23	“	615-3	도	89	89		국(건설부)			
24	“	977-1	구	217	121		국(건설부)			
25	“	615-8	대	282	211		함안군			
26	“	977-2	도	39	34		국(기획재정부)			
27	“	625-5	대	5	5		함안군			

3.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도시건축과(055-580-2705) 및 건설교통과(055-580-2613)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창녕군 고시 제2023-144호

창녕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창녕군 고시 제2021-77호(2021.5.20.)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녕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창녕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창녕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노후정수장(상월) 정비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정수장 정비(A=3,1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창녕군수(수도과)
- 주 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실음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도시건축과(☎530-17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조서

사업명: 노후정수장(상월) 정비사업

구 분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145-1	수	2,451	2,451		창녕군
2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167	전	1,561	320		창녕군
3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168	전	1,169	415		창녕군
합 계					3,186		

● **창녕군 고시 제2023-145호**

창녕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창녕군수

가. 실효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붙임1

나. 실효일자 : 2023. 5. 26.

다.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 사업의 미시행

라.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관계도서는 창녕군청 도시건축과(055-530-17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붙임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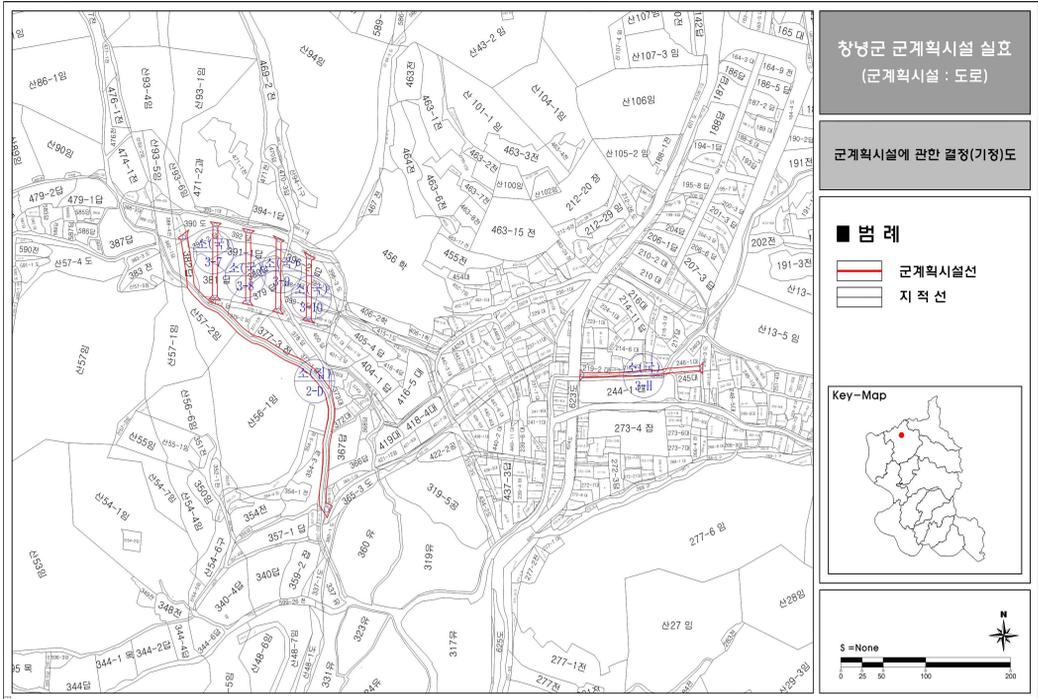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D	8	집산도로	411	365-6유	388-6전	일반도로	2003.05	부분실효
변경	소로	2	D	6~8	집산도로	343	599-11천	388-6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H	4~5	국지도로	145	219-2대	246-3도	일반도로	2003.05	부분실효
변경	소로	3	H	4~5	국지도로	108	219-2대	599-15천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84	392-1답	381답	일반도로	2003.05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81	392-1답	379답	일반도로	2003.05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80	392-1답	378답	일반도로	2003.05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71	395-1전	399-1답	일반도로	2003.05	전체실효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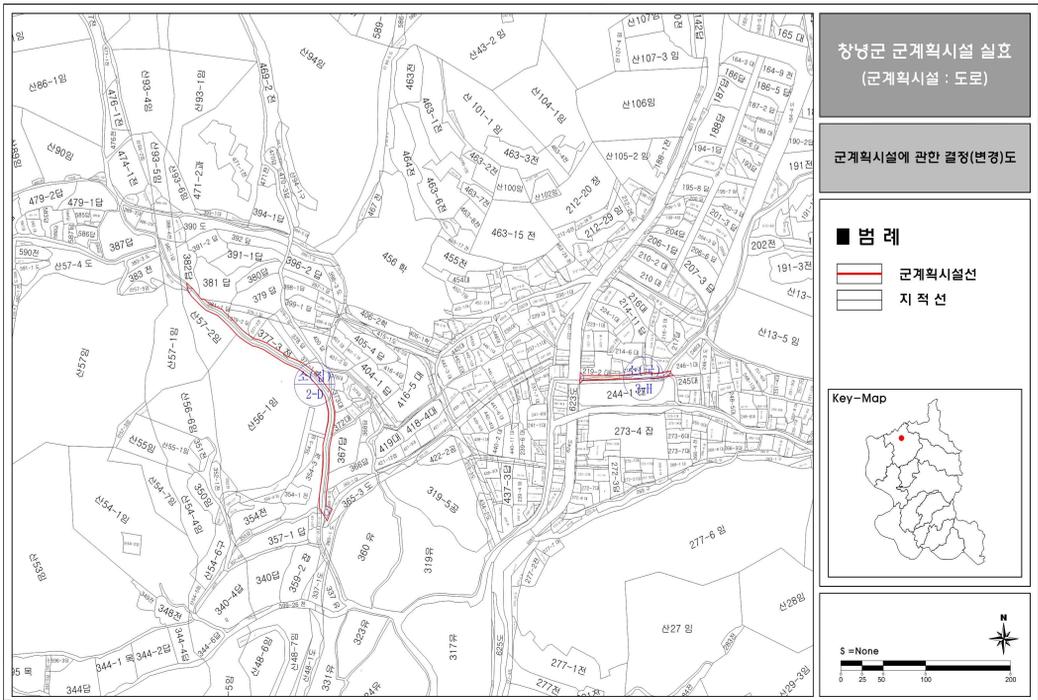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D	소로2-D	○ 폭원, 연장 및 기점변경 - 폭원 : 8m → 6~8m 감)2m - 연장 : 411m → 343m 감)68m - 기점 : 365-6유 → 599-11천	○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소로3-H	소로3-H	○ 연장 및 종점 변경 - 연장 : 145m → 108m 감)37m - 종점 : 246-3도 → 599-15천	○ 일부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소로3-7	-	○ 도로 폐지	○ 장기미집행 도로로 도로 전 구간 실효
소로3-8	-	○ 도로 폐지	○ 장기미집행 도로로 도로 전 구간 실효
소로3-9	-	○ 도로 폐지	○ 장기미집행 도로로 도로 전 구간 실효
소로3-10	-	○ 도로 폐지	○ 장기미집행 도로로 도로 전 구간 실효

[붙임2]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기정



○ 변경



● 고성군 고시 제2023-1534호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1. 고성군 고시 제2023-125호(2023. 7. 13.)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89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6)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발전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사업
- 명칭: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당초: 연장 100.5m, 폭원 23.0~26.5m, 면적 2,187.0㎡
- 변경: 연장 100.5m, 폭원 23.0~26.5m, 면적 2,245.0㎡(증 5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 성명: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희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일: 2022년 5월
-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6. 변경사항: 지적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구역 및 면적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아래 참조

8.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삼천포화력발전소 내 삼천포본부 진입도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616,344.0	2,187.0	2,245.0						
1	하이면 덕호리	988-4	제	9,947.0	178.0	178.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삼성동)				
2	하이면 덕호리	988-3	장	33,558.0	580.0	580.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삼성동)				
3	하이면 덕호리	988-2	도	1,732.0	995.0	1,025.0	기획재정부					
4	하이면 덕호리	889	장	144,594.0	48.0	71.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충무공동)				
5	하이면 덕호리	993	도	6,937.0	37.0	42.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충무공동)				
6	하이면 덕호리	952	장	419,576.0	349.0	349.0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충무공동)				

● 하동군 고시 제2023-179호

하동군관리계획 [교통시설 : 도로(중로1-13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2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하 동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결정 (변경)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3	20	집산 도로	14,503	용강 쌍계 지구	대성리 산327-2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6.30.	
변경	중로	1	133	20	집산 도로	14,508	용강 쌍계 지구	대성리 산327-2	일반 도로	-	군고28호 '11.6.30.	선형 변경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33호선	중로 1-13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선형변경 - 연장 : 14,503m → 14,508m(증 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압교 제가설 접속도로 구간의 교통이 혼잡하고 교 통안전이 취약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도로 일부 구간 선형 변경

2. 군계획시설 사업(중로1-133호선)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의 위치

- 시점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93-2
- 종점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202-2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중로1-133호선) 확포장공사
- 사업의 명칭 : 지방도 1023호선 목암교 재가설 접속도로 설치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6,217㎡
- 규모 : 지방지역 집산도로(지방도)

구 분	구 간	시 설 규 모	설 계 속 도	폭 원
선형변경	일반부	L = 0.29km	50km/h	2차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1

4.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도 : 붙임 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 도시건축과, 하동군 안전총괄과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사

※ 목암교 재가설 접속도로 설치공사에 따라 편입되는 면적임.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하동군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화개면 용강리	산93-2	임	1,517	1,016	화개면 운수리 208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2	화개면 용강리	산93-1	도	50	50	화개면 운수리 208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3	화개면 용강리	1325	천	178,423	1,393		국(환경부)			
4	화개면 용강리	1343	구	1,716	57		국(국토교통부)			
5	화개면 용강리	산90	임	1,413	359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66-28	김종식			
6	화개면 용강리	산90-1	임	14	14	전남 구례군, 읍 토지면 내서리	임정규			
7	화개면 용강리	1342-2	도	292	292		국(국토교통부)			
8	화개면 용강리	1342-3	도	119	119		"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이해관계		
	하동군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 내용
9	화개면 용강리	1341	구	1,488	484		"			
10	화개면 용강리	209-2	답	103	103		경상남도			
11	화개면 용강리	209-3	도	6	6		국(국토교통부)			
12	화개면 용강리	1342-1	도	139	139		국(국토교통부)			
13	화개면 용강리	산89	임	2460	26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85-2	정춘애			
14	화개면 용강리	202-3	답	23	23		경상남도			
15	화개면 용강리	1342	도	217	200		국(국토교통부)			
16	화개면 용강리	211-3	도	102	102	화개면 용강리 450	이면구			
17	화개면 용강리	211-2	도	179	179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510	김종필			
18	화개면 용강리	201-6	도	655	427		국(국토교통부)			
19	화개면 용강리	211-4	답	69	69	군포시 당동 782-11 턱은빌라 에이-302	김종식			
20	화개면 용강리	210-2	도	73	73	전남 여수군 두남면 대포리	박성협			
21	화개면 용강리	208-2	도	86	86	화개면 운수리 289	김용팔			
22	화개면 용강리	209-1	도	116	116		경상남도			
23	화개면 용강리	207-2	도	30	30	화개면 용강리 251	이성조			
24	화개면 용강리	207-1	답	137	4	화개면 화개로 481-16	최윤철			
25	화개면 용강리	202-2	도	433	373		경상남도			
26	화개면 용강리	201-3	도	679	261		국(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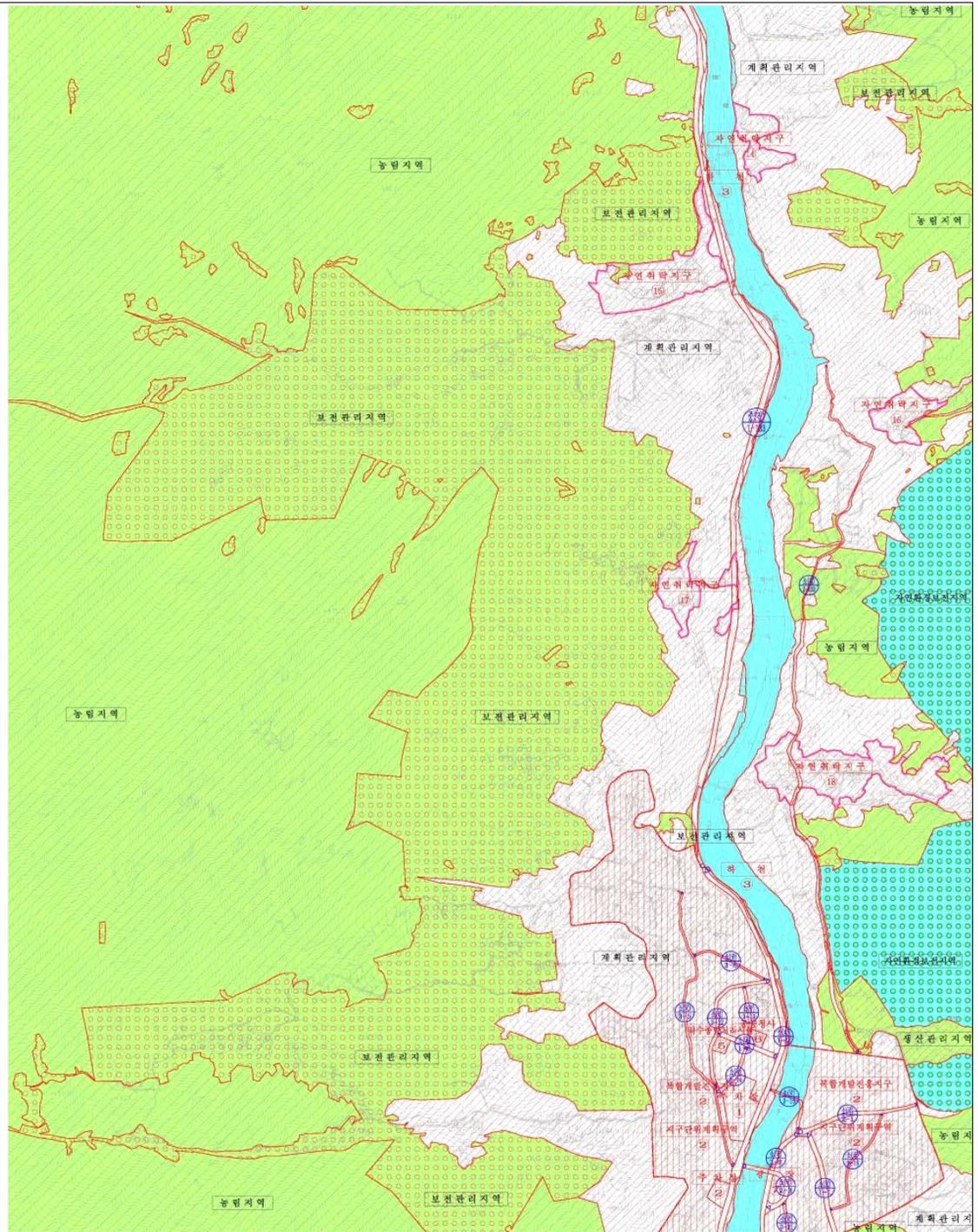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이해관계		
	하동군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27	화개면 용강리	202-5	답	349	214	전북 군산시 동지곡길 53, 104동 303호	임종윤외2인	경남 진주시공단로30 110동 304(상평동일스위트) 경남 진주시진양호로 115번길3-1(평거동) 전북 군산시 동지곡길53 104동303호(은파코아루)	배현주 배중현 임종윤	1/3 1/3 1/3
28	화개면 용강리	202-1	도	76	2	전북 군산시 동지곡길 53, 104동 303호	임종윤외2인	경남 진주시공단로30 110동 304(상평동일스위트) 경남 진주시진양호로 115번길3-1(평거동) 전북 군산시 동지곡길53 104동303호(은파코아루)	배현주 배중현 임종윤	1/3 1/3 1/3
합 계				190,964	6,217					

[붙임 2] ○ 군관리계획결정도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도
 지방도023호복합교 재가설 접속도로 설치공사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도
 중로1-133호선

● 함양군 공고 제2023-1122호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 개설공사 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79-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2-5 소로3-19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19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70.0m, B=6.0~8.0m	

3. 사업의 시행자

-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

5. 공사완료일 : 2023. 10. 1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 거창군 고시 제2023-125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약초 유통센터 작업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
- 명 칭 : 거창약초 유통센터 작업장 비가림시설 설치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종류	시설명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유통업무 설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94,523.9	37,263	기존 15,575.59 증축 86.45	기존 15,575.59 증축 86.45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09.1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불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읍 대평리	1347	창	37,263	37,263		거창군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4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함안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함안군수(공원관리사업소)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입곡공원길 291-12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범수면 윤내리 118번지 일원 면적 : 19.5㎡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임시 이동식 화장실 설치 ○ 시설개요 : - 이동식 화장실 1개소(6.5×3.0×3.0m, A=19.5㎡)
점 용 기 간	2023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남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1-2번지 외 10필지 일원 면적 : 248.8㎡ / 일시 624.2㎡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금평배수장 설치에 따른 토출관로 설치 ○ 시설개요 : - 강관압입 248.8㎡(강관압입(D2,000×2련) A=154.8㎡ - 날개벽 A=94.0㎡ - 일시점용 톤마대 및 돌망태 A=624.2㎡
점 용 기 간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49호**

하천점용(변경,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창녕군수(관광체육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88-4번지 일원 면적 : 2,961㎡ (당초 2,92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및 연장사유 : 풋살장 추가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남지체육공원 내 족구장 및 풋살장 설치 ○ 시설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족구장 2면, 풋살장 1면 - 가동형 헨스(전도식, H=3.0m, L=254m) - 이동식 관리용사무실 3동, 이동식 화장실 1동 - 수도인입관(PE관 Φ30mm, L=350m)
점 용 기 간	당초 : 2017년 7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변경 :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5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창녕군수(관광체육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44번지 외 90필지 일원 면적 : 64,503㎡ (당초 69,25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사유 : 시설물(이동식사무실 및 창고) 추가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남지체육공원 및 휴게공간 설치 ○ 시설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잔디축구장 1면, 다목적운동장 2면 - 씨름장 1면, 농구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 이동식 관리용 사무실 5개소, 먼지털이기 1개소 - 이동식 화장실 1개소(콘크리트포장 55㎡, 옹벽블럭 H×L=066m×19m) - 이동식 관리용 창고 1개소
점 용 기 간	2021년 1월 17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5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창녕군수(관광체육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1097번지 외 2필지 일원 면적 : 46,345㎡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사유 : 시설물(이동식사무실 및 화장실) 추가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이방 우산지구 체육시설 설치 ○ 시설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구장·축구장 겸용구장 1면 - 족구장 4면, 주차장 1면 - 이동식 관리용 사무실(3m×9m) 2동 - 이동식 화장실(3m×9m) 1동
점 용 기 간	2022년 7월 23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해시장(건설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65번지 일원 면적 : 1.1㎡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마을안내판 설치 ○ 시설개요 : - 안내판 : 1,800mm×120mm×2,520mm
점 용 기 간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6호**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호(2023.1.5.)로 고시한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I. 산업단지 개요

- 1. 관리기관** :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2.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

3. 조성목적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
-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조선관련 운송장비, 기계·조립부품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4. 추진경위(변경)

- 2003.10.30.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재정경제부 제2003-21호)
- 2008. 1.24.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경상남도 제2008-18호)
- 2009. 6. 4.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 제2009-111호)
- 2009.11.24.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지식경제부 제2009-262호)
- 2010.11.23. : 공사 착공
- 2012.12.18.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2-543호)
- 2012.12.20.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2-22호)
- 2013.10.23.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제2013-118호)
- 2014. 1. 8.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4-2호)
- 2014. 1.16.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4-1호)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 2016. 1. 8.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6-1호)
- 2016. 3.24.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6-5호)
- 2016. 3.24. :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6-6호)
- 2016. 9.26.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6-321호)
- 2017. 2. 9.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7-2호)
- 2017. 4.13. :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7-137호)
- 2017. 7. 6.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7-10호)
- 2017.11.27.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7-477호)
- 2017.12.28.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7-19호)
- 2018.11. 9.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8-420호)
- 2018.12.20.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8-21호)
- 2019.10. 4.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19-13호)
- 2019.12. 5.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경상남도 제2019-515호)
- 2020. 1. 9.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0-1호)
- 2020. 4.16.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0-7호)
- 2020. 6.11.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제2020-283호)
- 2020. 9. 3.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0-21호)
- 2020.11.18.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90호)
- 2020.12.31.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0-29호)
- 2021. 2.25. :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1-6호)
- 2021. 3.18. : 대송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1-10호)
- 2021. 4. 1. : 대송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1-11호)
- 2021. 5. 6.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제2021-245호)
- 2021. 5.27. :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1-18호)
- 2021. 7. 1.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1-23호)
- 2022. 1.13.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제2022-8호)
- 2022. 1.27.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2-1호)
- 2022. 3.17. :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2-2호)
- 2022.10.25.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2-176호)
- 2022.12.22.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2-15호)
- 2023. 1. 5. : 대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3-1호)
- 2023. 7. 6.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3-140호)
- 2023.10. 5. :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2023-15호)

경 남 공 보

제2637호

2023. 10. 12.(목)

5. 분양현황 및 계획(변경)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분양 가능 면적					조성기간	사업시행사
		분양	미분양			계		
			조성중	조성완료	소계			
계	1,371,602	62,712	816,413	-	816,413	879,125	2009 ~ 2024	하동군
산업시설 구역	809,791	62,712	747,079	-	747,079	809,791		
지원시설 구역	49,192	-	49,192	-	49,192	49,192		
공공시설 구역	259,780	-	20,142	-	20,142	20,142		
녹지구역	252,839	-	-	-	-	-		

※ 공공시설 용지 중 분양가능용지 : 송전철탑 848m², 폐기물처리장 19,294m²

6. 입주 및 고용계획(변경)

(단위: 개, m²)

입주업체수				분양가능면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2	2	-	-	879,125	809,791	49,192	20,142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입지여건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충계획		
		사업기간	규모	시행기관
도로	-남해고속도로 (하동IC 5km) -국도 19호선 -대송 내부간선도로 -갈사만진입도로 1~4호선	-	-	-
철도	-경전선 (접근거리 17km)	-	-	-
항공	-여수공항 (접근거리 50km) -사천공항 (접근거리 39km)	-	-	-
항만	- 광양항 (접근거리 19km)	2014~2023	-하동항 2만톤급 갑화부두 1선석	하동군
용수	-용수량 2.2만m ³ /일 -관로 3.9km(관경350mm)	-	-	-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충계획		
		사업기간	규모	시행기관
폐수처리		2009~2030	-폐수 : 1,800m ³ /일 ※ 1단계사업 기간: 2021~2023.4 ▶ 공공폐수 Q=450m ³ /일 ▶ 물재이용 Q=400m ³ /일 -물재이용 : 1,700m ³ /일 -관로 4.4km / 클린로드 1.5km	하동군
폐기물처리장		2009~2024	-소각시설 : 11톤/일 -매립시설 : 28톤/일 -재활용 : 83.2톤/일 -기타 : 3.9톤/일	일반사업자
전력		2009~2024	-공급용량 : 9만kW -예측부하량 : 4.2만kW	한국전력
통신		2009~2024	-전화선 4,784회선 공급	KT
도시가스공급		2009~2024	-배관망 구성 →공장·수용가 공급	일반사업자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대송산업단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관리기본 방향

- 인근 산업단지와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산업단지로 계획 관리
-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²,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비고
면적	1,371,602	809,791	49,192	259,780	252,839	
비율	100	59	3.6	19	18.4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2조 제17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 가능한 시설

3) 공공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5 규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

4) 녹지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다. 용도별 구역계획도 : 별첨 #1

4.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가. 배치계획(변경)

(단위 : m², %)

구 분		면 적	업체수	비 고
산업시설용지 계		809,791	2	
식료품제조업	C10	(82,712)	1	Ⅲ구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C20	(503,504)		I 구역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503,504)		I 구역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727,079)		I,Ⅱ구역
1차금속 제조업	C24	(727,079)		I,Ⅱ구역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5	(503,504)		I 구역
전기장비 제조업	C28	(503,504)		I 구역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223,575)		Ⅱ구역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586,216)		I,Ⅲ구역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727,079)		I,Ⅱ구역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809,791)		산업용지 전체
연구개발업		M70		A12-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태양력발전업(35114)	(809,791)		산업용지 전체
	기타 발전업(35119)	(809,791)	1	산업용지 전체
	송전 및 배전업(35120)	(11,572)		A4-2

※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 : 별첨 #2(변경)

나. 공공 및 지원시설 설치 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합 계	308,972	
지원시설	소 계	49,192	
	지원시설	34,860	
	주차장	14,332	
공공시설	소 계	259,780	
	폐기물처리장	19,294	
	배수로	24,031	
	송전철타	848	
	폐수종말처리장	7,000	
	도로	190,970	
	공원	17,637	

5. 입주기준

가. 입주대상업종(변경)

- 1)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2)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3) 식료품 제조업(C10)
- 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5) 1차금속 제조업(C24)
- 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D35)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조 가목2)의 태양력발전업(D35114)
- 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중 기타발전업(D35119)
- 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중 송전 및 배전업(D35120)
- 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 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1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C34)
- 15) 연구개발업(M70)

나. 입주자격(변경)

- 1)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동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의 경우, 대송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의 기업경영활동을 위한 경우 중복 가능
 - ※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분양공고 시 입주자격 및 입주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입주제한 : 「산집법」(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사항 등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및 환경유해물질 발생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주차장법」제2조 1항 규정의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3) 공공시설구역

-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요자

Ⅲ.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 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이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집법」 제 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 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분할 기준 면적

- 「산집법」 시행규칙 제 39조의3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로 한다.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집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 다만, 연결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결 부지와 합필하여 1,650㎡이상 되는 경우,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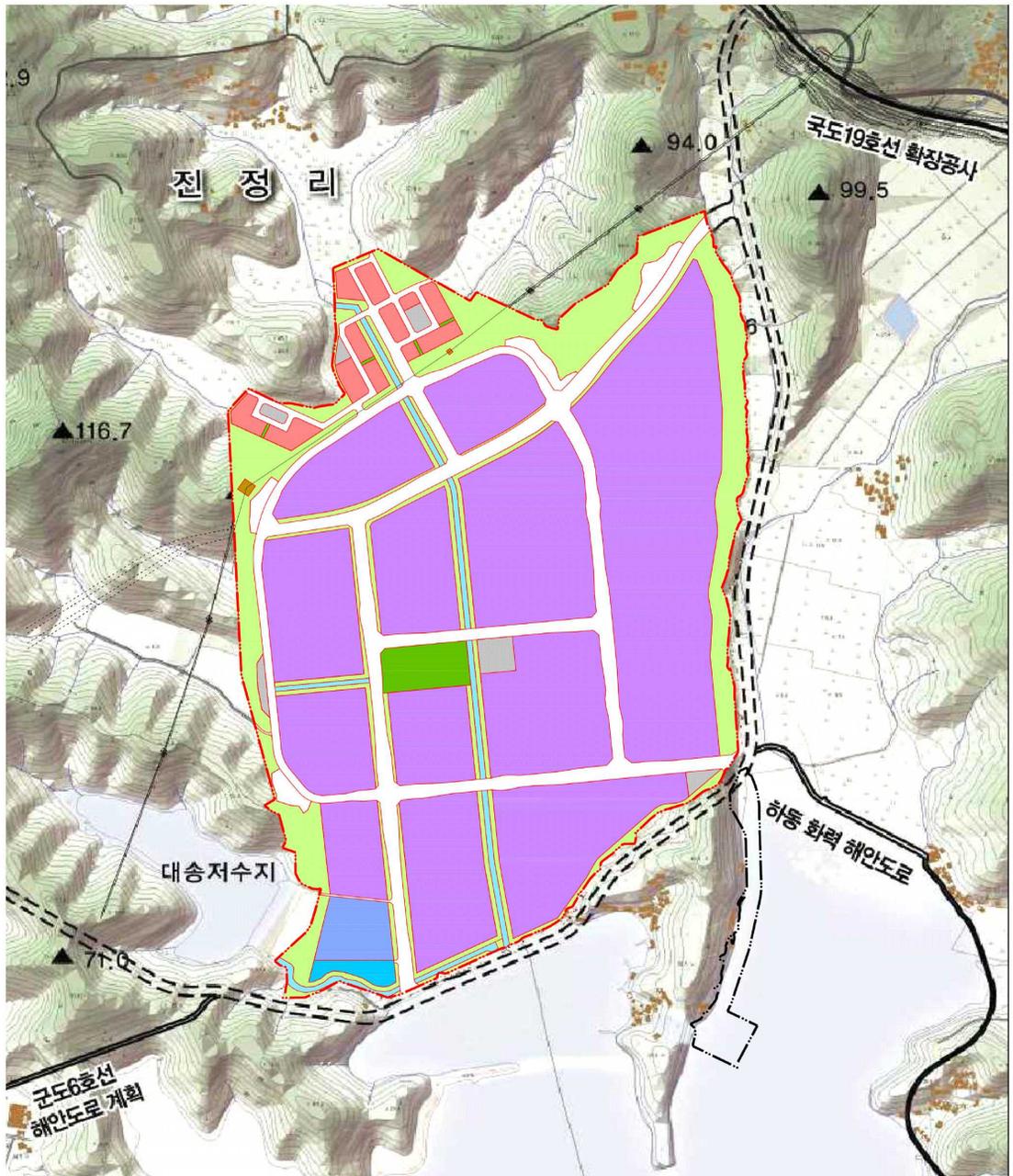
6. 기타사항

- 기타 입주기업체 지원 및 관리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별 첨

1. 용도별 구역 계획도
2.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변경)

별 첨#1. 용도별 구역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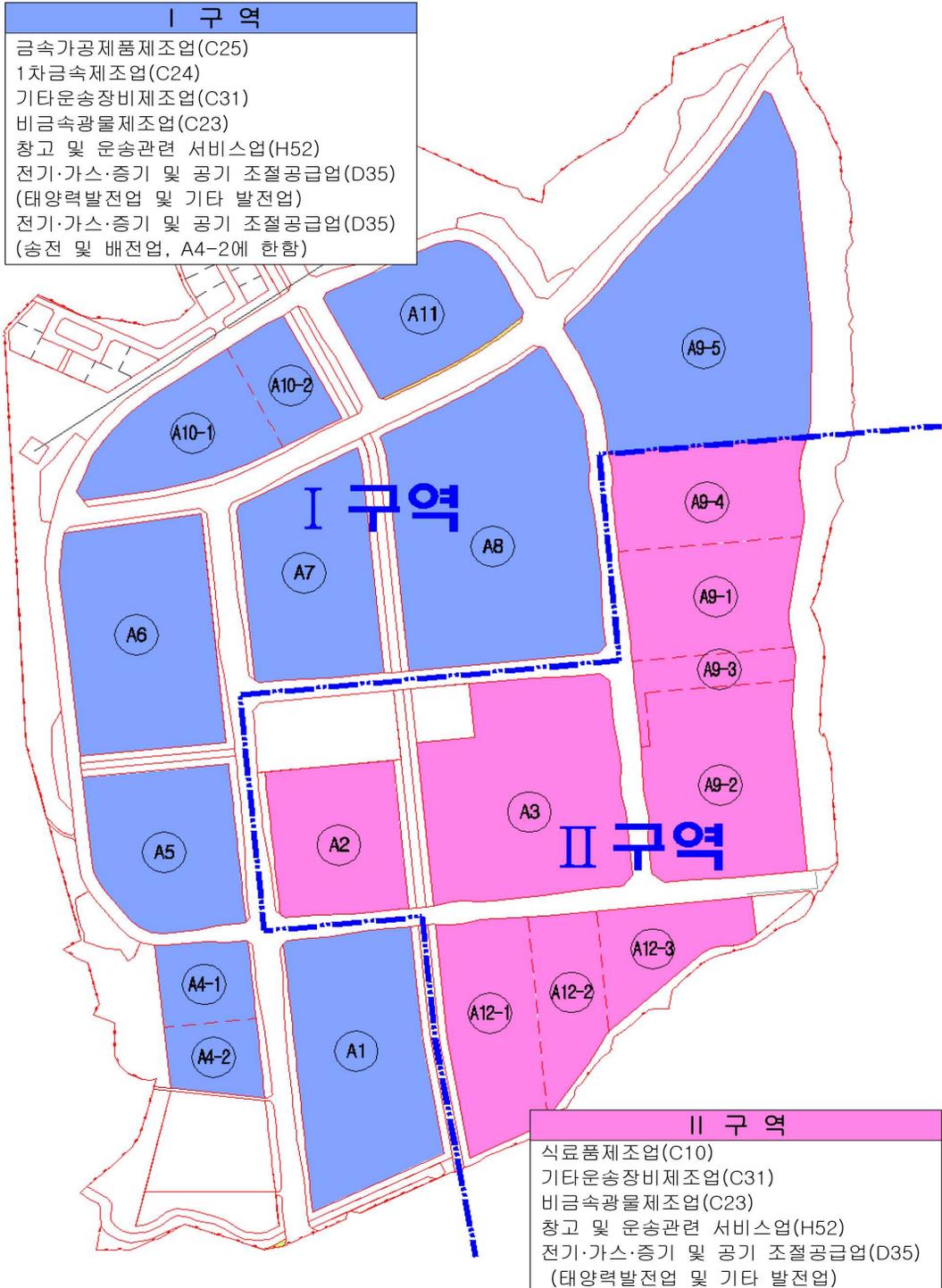
	구역계		배수로		녹지
	산업시설용지		폐기물처리장		근린공원
	지원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송전철타
	주차장				

대승신업단지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S = 1 : 5,000

별 첨#2.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도(변경)

(당초)



(변경)

- | II 구역 |
|--------------------------|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C34) |
| 비금속광물제조업(C23) |
| 1차금속제조업(C24)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D35) |
| (태양력발전업 및 기타 발전업) |

- | I 구역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 전기장비 제조업(C28) |
|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C34) |
| 비금속광물제조업(C23) |
| 1차금속제조업(C24) |
|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D35) |
| (태양력발전업 및 기타 발전업)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D35) |
| (송전 및 배전업, A4-2에 한함) |

